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중소기업청으로부터 「특례보증 운용기간 연장 통보」가 시달됨에 따라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거

가. 중소기업청 「특례보증 운용기간 연장 통보」
(기업금융과-1289, 2016.12.29.)

나. 신용보증재단중앙회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취급기준 개정·시행
알림(운용기간 연장 등)」(보증2016-34047, 2016.12.29.)

2. 주요 개정내용 : 특례보증 운용기간 연장

현 행	개 정
2015.10.01. ~ 2016.12.31. (한도 소진시까지)	2015.10.01. ~ 2017.12.31. (한도 소진시까지)

3. 시행일 : 2017.01.01. (접수일 기준)

- 붙 임 : 1.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2.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3.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
4.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방법 1부. 끝.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협조자

시행 보증지원부-36 (2017.01.11.) 접수 ()
우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/ 전송 /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/ 공개